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77

발의연월일: 2020. 11. 18.

발 의 자 : 윤주경 · 배준영 · 윤창현

김희국 · 최승재 · 김기현

윤두현・강기윤・박대수

김정재 · 주호영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하면서 퇴직공무원·군무원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이 가능한 경우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포함함으로써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법률 제 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를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신규 채용) ① (생 략)	제7조(신규 채용) ① (현행과 같
	승)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	
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	
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0.「군인사법」 제54조의2에</u>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사망한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성
	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를 말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